

1. 개정이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안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별지 5호 서식, 별지 9호 서식)

제15조를 포함한 5개 조문과 2종의 별지 서식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함.

나. 조사대상 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11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가구선정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다.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 각 조사항목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라.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직무 명시(안 제13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에 따라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과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한 바, 각

조사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국민건강영양조사 공표 주기 신설(안 제15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하도록 공표 주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을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지사”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국민영양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국민건강영양조사가구 선정통지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조사내용) ①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 및 치료 여부, 의료이용 정도 등
3.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 흡연·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
4. 그 밖에 조사대상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3. 그 밖에 조사대상의 식품섭취 및 식생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의 제목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조사원 :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 · 기록
2. 영양조사원 :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 · 기록

제15조의 제목 “(조사표 작성등)”을 “(조사표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 · 집계등”을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 · 집계 등”으로, “공표”를 “매년 공표”로 한다.

제16조 중 “영양조사의 시기 · 대상 · 세부내용 · 결과등”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 · 대상 · 세부내용 · 결과 등”으로, “국민영양개선”을 “국민건강영양개선”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건상상태”를 “건강상태”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민영양조사원증”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민영양조사원임”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조사가구번호
제 호

국민건강영양조사가구선정통지서

성 명:

주 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귀 가구가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가구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① <u>시·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u>국민영양조사가구선정통지서</u>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① <u>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u> ----- ----- ----- <u>국민건강영양조사가구선정통지서</u>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사내용)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조사내용) ①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건강상태조사 :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질병·사고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음주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1. <u>가구에 관한 사항 :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u>
2. <u>식품섭취조사 : 식품의 섭취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u>	2. <u>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 및 치료 여부, 의료 이용 정도 등</u>
	3. <u>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 흡연·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u>
	4. <u>그 밖에 조사대상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u>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영양

시하는 사항

3. 식생활조사 : 규칙적인 식사 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의 과다여부에 관한 사항, 외식의 횟수에 관한 사항, 2세이하 영유아의 수유기간 및 이유보충식의 종류에 관한 사항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영양조사원) ①영 제22조 제1항에 따른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은 건강상태조사원·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하되, 각 조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섭취조사원으로 하여금 식생활조사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상태조사원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섭취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3. 그 밖에 조사대상의 식품섭취 및 식생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조사원 :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2. 영양조사원 :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3. <u>식생활조사원 : 제12조제3호</u> <u>의 규정에 의한 식생활에 관</u> <u>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u> 제15조(<u>조사표 작성등</u>) 질병관리 청장은 <u>영양조사</u>가 끝난 때에는 <u>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u> <u>류·집계등 통계처리</u>를 하고 이 를 <u>공표</u>하여야 한다. 제16조(<u>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u>)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 장은 <u>영양조사의 시기·대상·</u> <u>세부내용·결과등</u>을 분석하여 이를 <u>국민영양개선</u>을 위한 자료 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u>영양지도원</u>) 영 제22조제2 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지역주민의 <u>건강상태</u> 및 식 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 ~ 6. (생 략) 제17조의2(<u>신체활동장려사업</u>)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u>신체활동장려</u>에 관한 조사	<삭 제> 제15조(<u>조사표 작성 등</u>) ----- ----- <u>국민건강영양조사</u>----- <u>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집계</u> <u>등</u> ----- -- <u>매년 공표</u>-----. 제16조(<u>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u>) ----- --- <u>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u> <u>·대상·세부내용·결과 등</u>--- --- <u>국민건강영양개선</u>----- -----. 제17조(<u>영양지도원</u>) ----- ----- -----. 1.·2. (현행과 같음) 3. ----- <u>건강상태</u> ----- ----- -- 4.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u>신체활동장려사업</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연구사업은 법 제16조에 따른 <u>국민영양조사</u>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 <u>국민건강영양조사</u>----- ----. ③ · ④ (현행과 같음)
--	---